

對外秘

## 서민 금융소외자 및 한계 중소기업 회생정책

-과중채무자 및 적자 중소기업 재기시스템 구축 중심-

2013. 05.

(주)한국기업회생연구소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 목 차

1. 정책목적 -----	1
2. 추진배경 -----	1
3. 과중채무자 및 적자기업 발생원인과 현제도의 문제점 -----	2
가. 과중채무자 및 적자 기업 발생원인 -----	2
나. 現 구제제도의 문제점 -----	3
4. 해소정책 -----	5
5. 정부예산 지원 검토 -----	7
6. 기대효과 -----	8
(참고1) 채무 조정·중재제도 비교표 -----	9
(참고2) 외국제도의 요약 -----	10

## 1. 정책목적

- 금융소외자 약 830만명 중 300만명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실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간의 자율 채무조정 및 중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신용불량자의 과중한 채무를 획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실패자들의 재창업 및 취업의 꿈을 심어주고, 서민금융공사를 설립하여 530만 적자가계의 수지개선 지원을 통한 빈부양극화 해소에 기여함
- 우리나라 총 660만개의 중소기업 중 약 200만 한계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회생컨설팅 전문가 양성과 관련 협회를 통하여 적자기업들의 회생 또는 법적파산을 위한 선행적 위기대응 체제를 구축함
- 채무자와 채권자간 자율 채무조정·중재 시장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당사자간 스스로 채무조정, 중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금융소외자의 적체를 획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多産多死主義 경향 해소에 따른 고용창출과 막대한 사회적 매몰비용 감소함

## 2. 추진배경

- 금융소외자 830만명의 구성을 보면 300만의 신용불량자와 530만의 적자가계로 대별되나 이는 각종 정부의 해소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적되어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함
  - 신용불량자 약 300만은 단일 채무자이거나 소액 채무자로 사적 및 법적구제 기회가 상실되고 법적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비용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용이 불가능함
    - 이들의 총 채무액은 약 45조원으로 이는 IMF 후 미해결된 장기 부실채무로써 해당 채권기관들은 이미 대부분 상각처리한 부외채권이며 동 부실채권은 현재 26개 신용정보회사가 대리 추심중임.

- 약 530만 적자가계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소득이 감소하고 서민금융기관 붕괴에 따라 5만여개의 대금업체로부터 초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음
- 중소기업자 약 660만개 중 30%인 200만개가 손익분기점 미만 적자기업이고 그중 85만개가 무리한 창업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매년 퇴출기업으로 전락 되고 있음.
  - ※ 85만개(기업 5만개/개인 80만개) → 매몰비용(연간 약170조원, 85만개×2억원)
- 신용불량자 및 한계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한 회생 및 파산 관련 현행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과 회생전문가의 부재로 과거와 별 차이 없이 결국 채권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억울하고 불리하게 퇴출되고 있음

### 3. 과중채무자 및 적자기업 발생원인과 現제도의 문제점

- 과중채무자 및 적자기업 발생원인
  - IMF 후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는 내수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소비자금융 확대 및 신용카드의 과잉 발급으로 무분별한 신용공여
    - 카드한도 초과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갑작스런 신용공여 한도 감축 등 규제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됨 (2003末 당시 신용불량자 380만명)
  -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한다’는 IMF 직후 신자본주의자들이 생산·유포시킨 일방적 논리에 매몰되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들까지 도산되도록 방치
    - 회생 가능기업도 퇴출되어 결국 실패 기업인으로 전락되어 재기불능의 상태로 됨으로서 기업 노하우가 소멸되고 따라서 사회매몰비용 급증
  - 금융 소외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채권자 위주의 금융기관만 있고, 채무자측 지원 기관과 서포터는 전무하여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추심기관의 무리한 추심에 노출되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 IMF 이후 비정규직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 감소와 서민금융시스템 붕괴로 차입비용의 증가함
  - IMF 前 서민금융기관 이었던 국민은행은 상업금융기관으로 합병
  - 신용협동조합은 약 3천개에서 ⇒ 1천5백개로 50% 감소
  - 새마을금고는 약 2천개에서 ⇒ 1천2백개로 감소
  - 상호저축은행은 약 240개에서 ⇒ 90여개로 대폭 감소
    - ⇒ 대신 私금융업자 5만여개가 고금리로 난립되어 탈법 운영되고 있음
- ※ 미소금융을 비롯한 이지론,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나 IMF 후 무너진 서민금융기관 기능을 대체하기에는 태부족임

## □ 現 구제제도의 문제점

- 채권·채무자간 사적 자율채무조정·중재 시장기능 부재
  - 적자 중소기업 및 신용불량자의 과중채무를 시장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 채무조정·중재기능 없이 법원과 채권자 일방적 조치로 회생 또는 파산 기회는 상실되고 결국 양측 피해만 가중시키면서 종결되고 있음
- 채권자의 대표적 사적 채무조정·중재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도
  - 채권자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처리결과가 법적제도 보다 불리하고
  - 신용회복위원회 설치 10년이 지난 현재도 금융소외자의 증가 및 신규발생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추세임
- ※ 2007년末 금융소외자 700만명, 2011년末 금융소외자 830만명 ⇒ 4년간 130만명, 19% 증가
  - 수요자 위주 채무상담 전문가 부재로 채무자에 적합한 맞춤 상담 곤란
  -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이고 지극히 제한적 워크아웃 제도운영에 그침

- 현재의 신용회복관련 종사자 대응의 한계점
  - 경영지도사 : 관련 지식 및 정보 부재, 회생컨설팅 능력 미비
  - 변호사 : 사무장 보좌 등 회생 컨설팅 능력이 부족하고 법적진행에 초점
  - 회계사 : 법원의 회생계획안 작성 등 일부 업무에 국한
  - 신용상담사(민간) : 채무조정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으나 보완이 필요
  
- 현행 채권기관의 추심의뢰 문제
  - 추심기관인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조정·중재 해결 보다는 수익을 위해 전액 회수를 목적으로 추심에 집착 → 상환능력 없는 신용불량자에 게는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불법·탈법추심에 노출됨

□ 채무자를 위한 기업회생 컨설팅 전문가 및 지원 전문기관 부재

- 약200만개 한계중소기업 중 85만개가 매년 퇴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해결할 컨설팅전문가 부재와 채무자 지원기관이 열악하여 채권자 일방의 논리로 퇴출되고 있음
  - 현재 (주)한국기업회생연구소에서 민간자격증으로 회생경영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정책적 확대 양성이 시급하며 이들의 구심점 조직이 필요
  - 현행 법조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장과 명퇴 금융인, 경영지도사, 신용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으로 우선 양성·투입 필요
  - 현재 법원에서 변호사·회계사는 협력관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자위주 처리로 진행되어 회생전문가가 적자기업 측을 지원하다면 원활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임

□ 법원의 법적조정, 중재 구제제도의 실효성 미흡

- 처리기간 장기, 관련전문가 부족, 심사의 경직성, 심사비용의 수익자 전가, 회생절차 관계인들의 이해부족과 비협조 관계 등

#### 4. 해소정책

- 신용불량자 약 300만명을 채무·채권자 합의중재를 통해 즉시 일괄 구제후 부실채권 당사자 간의 중개매매 상시 시장시스템 운영 필요함
  - 부실채권 시장매매율은 평균 약 4.3%수준으로 채권 금융기관과 협의·변제를 통하여 사실상 일괄적으로 매입하면 구제 후 완전 신용회복 조치됨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NPL : non performance loan/무담보·무보증)은 신용정보회사인 추심기관에 추심위임 또는 AMC에 1.5%~7.0 수준 매각
      - ※ 채권추심기관 : 26개사, 추심 중 신불자 약300만명, 부실채무액 약 45조원
      - ※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
  - 부실채권중개 상시 시장시스템 구축 허용 필요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실채권 상환 전자 상거래 중개
    - 채무자 지위에서 채권자에 대한 상환중개 협상대리권 부여
    -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용
  - 결과적으로 채무자·채권자 쌍방 win-win
    - 채무자 : 최소 비용으로 채무해결하고 신용회복 및 재기기회 마련
    - 채권기관 : 채권추심위임이나 파산보다 유리한 변제조건 획득
- 서민금융기관의 확충·신설 및 저신용자 지원
  - 서민금융기관의 확충·신설
    - 과거 국민은행수준의 서민금융전담 서민금융공사 신설
    -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전담 대형화를 통한 역할 증대
    - 신용협동조합과 마을금고의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 방안 강구 필요
    - 미소금융도 현장위주의 수요자 중심조직의 대폭 확충 및 보완
  - 약 530만 적자가계의 수지개선을 위한 서민금융컨설팅 제공과 저신용자들 중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 제도권내에 진입한 대상자들의 금융 활동 지원 강화

- 이들이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활성화 즉, 미소금융·햇살론·희망홀씨대출·이지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확대
- 신용회복중에 있는 低신용자 전용카드제 도입 등

□ 사적 채무조정·중재 시장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 채무·채권자 상호 조정·중재기능이 원만하도록 채무조정 전문가에게 채무자 대리권 부여
- 법원 구제신청前 채무·채권자 사전 채무조정 의무제도 마련 (전치주의)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법적구제 신청前 채권자와 사전 채무조정 의무제도인 “전치주의” 도입 관련 법률개정 (미국 2005년 채택)
  - 채무·채권자 쌍방 동등한 조정·중재제도로써 쌍방 win-win 결과 기대

□ 한계중소기업 및 실패기업인 구제 컨설팅 중소기업청과 연계 실시

- 대상 : 약200만 한계 중소상공인 중 퇴출 중소기업자(연간 85만개 발생)
- 방안 : 회생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진단·처방·치유시스템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추진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정책과 연계하여 퇴출기업을 아래 4단계별 맞춤컨설팅 제공
  - 구조조정을 통한 자발적 회생, 사적 채무·채권 조정을 통한 워크아웃, 기업회생, 법적파산을 통한 사업체의 주 채무와 보증채무 해소
  - 도산기업도 전문가의 법적 파산절차 지원으로 청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채권자중심 처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

□ 채무조정·중재 및 서민금융 컨설팅 전문가 양성과 전문단체 설립

- 전문가 : ‘회생경영사’ 약1만명 교육 양성 후 공인자격증 추진

- 한계중소기업 및 과중채무자의 자발적 회생, 워크아웃, 기업회생  
법적파산 그리고 이들의 회생을 위한 서민금융컨설팅 제공
- 전문기관 :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중소기업청에 신청예정)
  - 회생전담 전문단체로 컨설팅 전문가양성 및 사적 조정·중재 구심점 역할
  - 기업회생·신용불량자 구제 전문가인 회생경영사 보수교육
  - 한계사업자 및 실패기업인 신용회복 컨설팅 민간구심점 역할
  - 장기 적체된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중재를 통한 일괄 구제 주관
  - 채무·채권자간 집단 채무조정·중재 기능 상설 운영
  - 기업회생·파산면책 등 법적 채무조정 상담지원

□ 법원 파산업무 담당기구 확대개편 검토 필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파산법원으로, 지방법원의 민사신청과는 파산부로  
승격 법적채무조정 수용태세 강화
  - 現 법원의 폭주업무 수용태세 강화와 소송경제 내실화 기대
  - ※ 전국 파산판사 약 45명, 1인당 연간 3,300건 처리 (통합도산법 이후 6년간 90만건)

## 5. 정부예산 지원 검토

□ 신용불량자 약300만명의 부실채무 상환재원 일부 지원 일괄 사면구제

- 채권기관이 대부분 상각 처리한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일부  
지원(정부 50%,채무자50%) 변제하고 신용불량자를 신용회복 조치 고려
- 시장가격 변제금액 규모 : 약 2조7천억원 (45조원×6%, 약 90만원/1인)
  - 부실채권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위임중이나 이들 채권을 시장에서  
매각시 채권액 기준 1.5~7%(평균 4.3%) 로 매매되고 있음
  - ※ 1.7%는 추심기관 등 중개 수수료로 예상하여 계산하였음

○ < 정부지원 당위성 >

- IMF 후 국가경제회복을 위한 과도한 소비자금융 확대에 기인한 신용불량자들의 공을 인정하되, 반면에 당시 정부 및 채권자 책임 일부 부담을 원칙

○ 단, 정부지원이 없어도 무방 (신용불량자는 변제채무 절대액이 대폭 탕감되어 일괄 변제 시에도 큰 부담은 없음)

□ 기업회생 컨설팅 비용 신청업체지원 대폭 확대 추진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제도 있으나 2012년 예산은 2억원에 불과
- 정부예산지원 불가시 수익자 (사업자) 부담 원칙

## 6. 기대효과

□ 약300만명 신불자 구제로 빈부 양극화 해소 기여 및 제반 사회문제 예방

□ 퇴출기업85만중 약30%회생 가능으로 매물비용 감소와 실업자 양산 방지

□ 소비자 중심의 시장채무조정·중재 시스템 구축으로 신용불량자 적체 차단

□ 실패기업인 및 신용불량자들의 재기 기회 부여 등 재 창업 꿈 분위기 확산

□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상실기업들의 사업전환 지원용이

□ 도산기업 및 신용불량자 감소, 조기 재 창업 지원으로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약 50만명 : 기업 수명연장에 따른 고용유지+신규 컨설팅인력)

(참고 1)

## 채무 조정·중재제도 비교표

구 분	법원 시행 (법적 채무조정제도)		채권금융기관 시행 (사적 채무조정제도)		한국기업회생 경영협회 시행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생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기업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집단 채권 채무조정· 중재
운영주체	법 원	법 원	채권단 (금융기관)	신용회복 위원회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시행시기	2006.04.01	2004.09.23	2004.05.20	2002.10.01	2013년 상반기부터 매 반기별
대 상 채권자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협약금융기관 2개 이상	협약금융기관 2개 이상	신용정보회사에 추심 위임 상각 채권자
채무범위	무제한	회생은 담보10억,보증 5억원 이하, 파산은 무제한	채무5백억 이상 대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	3억원 이하	무제한
대 상 채무자	파산원인이 있는 영업소득자	가용소득이 있을시 회생 없을시 파산	과중채무기업	3개월이상연체 과중채무자	상각채권 소유 채무자 약 300만명
채무조정 수 준	변제기간 3년거치 7년 상환. 청산액<변제액>	가용소득 범위내 변제기간 3~5년, 파산 후 면책	변제기간 5년 이내 원금감면 불가	변제기간 3~8년 이내 원금감면 불가	NPL 시장 매매율 (1.5%~7%수준) + 추심회사 마진 + 조정·중재 수수료
법적효력	채권자 강제집행 중지 변제계획 이행 시 면책	회생은 변제이행 후 면책 파산은 면책불허 사유 외 면책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조정·중재 (채권채무 당사자 합의)
장 점	신청자의 영업이익 또는 가용소득 범위 내 상환하고 잔액은 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강력		절차 신속 간편하고 신청비가 저렴하며 신용회복위의 교육 병행 및 일부자금지원		1.IMF이후 적체된 신용 불량자 일거에 해결 2.채무변제수준이 현저 히 낮고 절차가 간편 하며 저비용으로 소액 채무자도 이용가능 3.당사자 합의로 상호 win-win가능하며 단 점은 없음
단 점	관련기록이 은행연합회에 5년간 유지되는 동안 신용공여 받을 수 없으며, 신청대행비등 비용과다 소요		법적제도 보다 채무변제 수준이 현저히 높아 채무자에게 불리 하고 채권자 중심의 사적 채무 조정임		

<참고 2>

## 외국제도의 요약

### 1. 서설

외국의 파산제도는 ①채무자들의 과도한 채무를 면제하고 새 출발을 보장해주는 방향의 법제(주로 미국의 경우)와 ②부채상환 계획의 수립, 상담, 중재의 실시, 도덕적 의무의 강조 등을 통하여 되도록 채무이행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제(주로 북유럽의 경우)로 대별된다. 본 내용은 외국의 소비자파산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로하고자 한다.

### 2. 미국의 청산절차와 회생절차

먼저, 미국의 파산법제는 소비자로서 하여금 청산(liquidation) 절차 또는 회생(rehabilitation)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파산절차와 유사한 미국의 청산절차는 제7장파산(chapter 7 bankruptcy)라고도 불리며, 파산신청이 있게 되면 파산법원은 관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신고된 채권이나 채무내용을 조사한 후 파산재단을 구성, 확충하고 이를 환가하여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추후의 갹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압류금지재산을 인정하고, 일정한 면책불허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용함으로써 파산자의 새 출발을 돕는다.

이에 비하여, 안정된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의 감면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게 하여, 자신의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장래의 수입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소위 제13장파산(chapter 13 bankruptcy)으로 불리는 재건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채무자들의 선택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미국의 채무자들이 어떠한 고려에서 제7장파산과 제13장파산을 선택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우리 파산법제에 재건 절차적 요소를 얼마나 도입할 것인가를 살

펴볼 수 있는 좋은 함의를 제공한다. 이에 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청산과 재건 중의 선택은 ① 부채의 성격 ② 파산 후의 신용과 체비용 ③ 면제자산의 범위와 임금압류여부와 같은 법률적 환경 ④ 신용상담의 제공여부 ⑤ 생활습관 및 주기(life-cycle), 소득의 형태, 주택보유여부, 주거지역과 같은 개인적 변수 등에 관한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Sullivan and Worden, 1990).

이중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네 번째의 소비자신용상담에 관한 것이다. 그 이유는 금융소비자신용상담 내지 소비자파산상담제도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는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므로 제도의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파산자들의 재건을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유럽의 소비자파산법제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잉글랜드)등 북유럽의 파산법제는 미국의 '새 출발의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접근보다는 '채무는 변제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접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파산법제의 특징은 모든 채무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게 하고, 부채와 관련한 상담, 협상, 조정 등을 반드시 거치게 하며, 미국과 달리 과도한 부채에 대하여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다. 특히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을 철저히 하는 대신 부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생을 두고 갚아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4. 미국과 유럽 법제의 접근현상

외국의 입법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유럽적 요소를, 유럽은 미국적 요소를 도입하려 함으로써 양자간에 서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전술한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미국적 요소를 가미한 파산법 개정안이 1992년 도입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새 출발의 요건을 유럽의 기준을 가미하여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채무청산 전에 의무적으로 재건절차(제13

장파산)을 거치도록 하는 문제, 일정 범위의 재산은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 등이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두 법제가 접근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산과 재건, 즉 새 출발과 채무의 이행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말의 고금리, 고실업, 자산가치 하락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파산법을 마련한 노르웨이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크다.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한 노르웨이의 새 파산법은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새 출발의 가능성을 보다 넓게 열어 놓았음에도, 평생 단 한번만의 파산을 허용하고 사전에 채권자단과의 조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정도의 기간에 걸친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유럽적인 제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 5. 금융소비자파산 상담요원과 조직

소비자파산 상담요원은 크게 두 분야에서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현행 소비자상담과 같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신용상담사이고, 둘째는 국가기관으로서 파산신청의 전치조건으로서의 파산상담요원이다.

전자의 예로서 미국에서는 소비자신용협회(NFCC, National Foundation for Consumer Credit)의 하부조직인 소비자신용상담서비스(CCCS,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파산의 대안을 전화나 통신을 통하여 상담하고 있다. 반면에 아직 예컨대 법원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전문상담요원을 두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파산신청을 위하여 반드시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소위 “전치주의” 도입 대안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담요원들에게 어떠한 덕목이 요구되는가?  
다른 상담업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파산 상담에 있어서도 적절한 정보와 지식의 보유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등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다. 특히, 신용상담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이나 기금의 활용가능성 또는 파산절차 일반에 대한 정보제공, 예 산수립원조, 부채상환 재조정에 관한 조언 등이 필수적이 덕목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신용상담이 파산신청의 전치조건이 된다면 상담요원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화, 직업화, 독립성, 윤리적 덕목 등이 함께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요원들을 짧은 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능력을 보유한 인력들을 활용할 것이 필요한데 그 하나가 바로 ‘명퇴 금융인들’의 활용방안이다. 우선 신용상담사 협회(가칭)를 설립하여 신용상담사 양성과정을 개설토록 하여 경영일반, 소비자 금융, 소비자상담, 부채관리, 통합도산법의 기초 등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게 하면 파산과 관련한 상담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전술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발맞추어 신용상담사 자격제도가 함께 도입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근거 : 서울법대 「기업의 갱생·도산과 법」 연구과정 세미나 자료(2002년)